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18
--------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 조문 변경 (안 제2조)
나. 2005.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으로 하고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한다.

제6조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법 제117조</u> 의 규정에 의하여 <u>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u> (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 <u>지방자치법</u> 」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u>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u>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u>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u> 을 준용한다.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 「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u>지방재정법</u> 과 동법시행령 및 <u>속초시재무회계규칙</u>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 「 <u>지방재정법</u> 」. 「 <u>속초시 재무회계규칙</u> 」.

관련법규 발취(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개정 전】

제117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94.3.16>

【개정 후】

제126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